

변경 공고 신 · 구 대조표

구분	변경 전	변경 후
지원내용	- (자문대상) Core기업 - 해외 투자자 간의 계약서(또는 계약조건)	- (자문대상) Core기업의 해외 투자유치와 관련한 아래 분야의 법률 자문 ① (투자계약) 해외 투자자 간의 계약서 (또는 계약조건) 예) 신주인수계약·주주간계약, 합작투자 (JV), 투자와 결합된 전략적 제휴) 공동개발·라이선스·판권 등), 구주 매매, 전환사채 등 ② (투자유치 준비) 해외 투자유치를 위한 사전 정비 및 실사 대응 관련 법률 검토 예) 정관·주주간계약 정비, 기존 투자자 동의권·우선매수권 등 검토 ③ (미국법인 설립) 해외 투자유치를 위한 미국 법인 설립 관련 법률 검토 예) 미국 법인 설립 절차 및 구조, 해외직접투자 신고, 국내 법인과 해외 법인 간 지배구조 전환(Flip) 관련 검토 등 ④ (외국환거래) 해외 투자유치에 따른 외국 환거래법상 신고·절차 등 검토 ⑤ (개인정보 국외이전) 해외 투자유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관련 검토
	- (자문기준) 글로벌 투자자(1개사)와 체결하는 계약 1건에 대한 법률 자문 * 기업-투자자(1:1) 단일 1건 계약을 기준으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함 * 단일 계약서에 다수 투자자가 포함 되어 있는 경우 지원 불가하나, 기업이 희망하는 경우 자부담 발생 조건으로 매칭을 검토 할 수 있음	- (자문기준) 글로벌 투자자(1개사)와 체결하는 계약 1건에 대한 법률 자문 * (추가) 동일 투자유치 건과 관련한 경우 자문대상 ①~⑤ 분야를 복수로 신청할 수 있으며, 기업당 총 자문시간(12시간) 범위 내에서 제공
	- (자문수행) 기업당 최대 12시간 이내 법률 자문 제공 * 해외 투자유치에 관한 계약, 협상, 요건 검토 등에 한하며, 지재권, 인증, 소송, 분쟁 등 해외 투자유치와 무관한 사항은 미지원	- (자문수행) 기업당 최대 12시간 이내 법률 자문 제공 * 해외 투자유치에 관한 계약, 협상, 요건 검토 및 이에 수반되는 미국법인 설립, 외국환거래, 개인정보 국외이전 검토 등에 ... (후략) ...
제출서류	<신설>	③ (필수) 사업장 서울소재 증빙서류 * 법인등기부등본,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(신청일로부터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)

기타사항	○ 해외 투자유치에 관한 계약, 협상, 요건 검토 등에 한하며, 지재권, 인증, 소송, 분쟁 등 해외 투자유치와 무관한 사항은 지원하지 않습니다. ○ 외국의 법률에 관한 자문은 자문 범위에서 제외됩니다.	○ 해외 투자유치에 관한 계약, 협상, 요건 검토 및 <u>이에 수반되는 미국법인 설립, 외국환거래, 개인정보 국외이전 검토</u> 등에 한하며, ... (후략) ... ○ 외국의 법률에 관한 자문은 자문 범위에서 제외됩니다. <u>단, 미국 법인 설립과 관련한 외국 법률 자문에 한하여 제공됩니다.</u>
-------------	--	--